

『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7월 8일

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가족단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탄소제로교육관의 휴관일을 당초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,
- 상위법령에 미규정된 이용자 권리 제한 조항과 중복 규정된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탄소제로교육관의 휴관일 변경(안 제6조)
당초 : 일요일 → 변경 : 월요일
- 관람의 제한 규정 삭제(안 제7조)
- 행위의 제한 규정 삭제(안 제8조)
- 변상책임 규정 삭제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- 본 「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당초 일요일이던 휴관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가족단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,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이용자 권리 제한 조항과 중복 규정된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법과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